

부설연구소 설립 및 운영 규정

제정 2006.10.1.

개정 2010.11.1., **2013.5.1**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동명대학교산학협력단 부설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설립과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소의 효과적 운영과 학문연구의 활성화 및 지역 사회 지식기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연구소 설립

제2조(설립신청) ①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산학협력단에 신청하여야 하며, 산학협력단장은 이를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.

1. 연구소 설립 계획서
 2. 본 대학교 전임교원 5인 이상의 공동발의서
 3. 당해 연구소의 규정
 4. 기타 연구소 설립에 관한 자료
- ②위 제1항 제1호의 계획서에는 연구소 설립목적, 주요 연구 분야, 조직 및 체계, 연구소 발전 계획, 향후 2년간 예산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③위 제1항 제3호의 연구소 규정에는 연구소 명칭, 목적, 사업내용, 조직, 연구원, 운영위원회, 재정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
제3조(설립기준과 요건) ①연구소 설립기준과 요건은 다음과 같다.

1. 연구 분야는 본 대학교의 학술진흥을 위하여 육성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기존의 연구소와 명칭이 유사하거나 연구범위가 중복되어서는 안된다.
2. 연구소의 인건비와 기본 운영경비는 자체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.

제4조(설립승인) 총장은 연구소 설립 신청안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한다.

제5조(예외) 제2조, 제3조,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총장이 인정하는 연구소를 따로 설립할 수 있다.

제3장 연구소 운영

- 제6조(연구소의 운영)** ①연구소는 연구소규정에 입각하여 운영하여야 하며,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.
- ②연구소장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연구소 제반업무를 통괄 운영한다. (개정 2010.10.5)
- ③연구소에는 연구업무, 예산 및 결산,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. (개정 2010.11.1)
- ④연구소의 연구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10.11.1)
- ⑤연구소는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논문집 및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·심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⑥공동연구원은 3명 이상 5명 미만으로 한다. (조항신설 2010.11.1)

- 제7조(연구소의 지원)** ①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는 연구소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소에 대한 행·재정적인 지원의 조정을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.
- ②신설연구소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.

제4장 재정 및 사업보고

제8조(예산) 연구소의 예산은 연구지원금, 수탁연구비 등의 사업수입금,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으로 충당한다.

제9조(회계) 연구소의 회계절차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회계규정에 따른다.

제10조(사업보고) ①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2월말까지 산학협력단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(개정 2013.5.1)

1. 당해연도 사업 및 운영보고서(개정 2010.11.1., 2013.5.1)
2. 차기년도의 사업계획서(개정 2010.11.1., 2013.5.1.)

제5장 평가 및 폐지

제11조(평가) ①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의 연구소 평가를 시행한다.(개정 2010.11.1)

②평가는 매년 1월초에 전년도 운영실태 및 사업실적 등을 기재한 연구소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며, 평가결과에 따라 행·재정 지원을 차등할 수 있다.(개정 2013.5.1)

③평가에서 부실하다고 판정된 연구소는 폐소 및 타 연구소와 통합 할 수 있다. (개정 2010.11.1)

④제1항의 연구소 평가기준과 방법은 별표 제1호와 같으며 행·재정 지원 등의 결정은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 (개정 2010.11.1)

제12조(폐지 및 해산)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소 폐지 신청안을 작성한 후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에 부의하고 총장이 연구소를 폐지할 수 있다.

1. 연구소의 사업이 목적과 위배될 때
2. 연구소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가 극히 저조하여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
3. 기타 총장이 필요로 할 때

②연구소가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산학협력단에 귀속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제1호] (신설 2010.11.1.), (삭제 2013.5.1)

[별지 제1호 서식] (신설 2013.5.1.)

연구소 설립을 위한 공동발의서

(_____)연구소를 설립함에 있어 본 연구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찬동하여 아래와 같이 연명으로 공동 발의합니다.

공동발의자				
연번	대학	학과(전공)	성명	서명(인)
1				
2				
3				
4				
5				

20 . .

출원인 : _____ 대학 _____ 학과(전공) 성명 _____ (인)

동명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

